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이정문・이연희・김영배

복기왕 • 이학영 • 전현희

박 정・김원이・홍기원

조승래 • 어기구 • 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 문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 축과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 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5절(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제23조의2(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 위원회를 둔다.

- 1.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 2. 금융에 관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 3. 금융에 관한 보안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23조의3(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 ②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술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2. 대학에서 경제학·경영학·회계학·컴퓨터공학 또는 정보보안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금융 관련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술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이 아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의4(회의 등) ①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금융 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
 - ②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로 본다.
- 제23조의5(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보안전문위 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다.
 -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6(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제23 조의2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 중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 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선물위원회회는"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금융위원회 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보안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보안전문위원회"로 한다.

제71조 중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준비행위)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임명 등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
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u>사항</u>
<u>6.</u> ~ <u>10.</u> (생 략)	<u>7.</u> ~ <u>11.</u> (현행 제6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5절 금융보안전문위원회
<u><신 설></u>	제23조의2(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둔다.
	1.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구축에 관
	<u>한 업무</u>
	2. 금융에 관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3. 금융에 관한 보안의 관리ㆍ
	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

<신 설>

응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 <u>무</u>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

 보안전문위원회에 부여된 업

 무

제23조의3(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보안전문위원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 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 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 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 술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었던 사람
- 2. 대학에서 경제학·경영학·

 회계학·컴퓨터공학 또는 정

 보보안학을 전공하고, 대학이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술에 관한 연구 실적이었는 사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이 아닌 금융보안전 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4(회의 등) ① 금융보안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이요구할 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이소집한다. 다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회의 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23조의5(조직·규칙 등) ① 이

<신 설>

<신 설>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 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 감독 업무 등을 수 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생략)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u>금융</u> 제58조(자료의 제출) -----<u>금융</u>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보안 전문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 된 것 외에 금융보안전문위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 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6(금융감독원에 대한 지 도 • 감독) 금융보안전문위원회 는 제23조의2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 독한다.

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② (현행과 같음)

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 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 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 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 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 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③ <u>증권선물위원회는</u>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 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
			-
제	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	령권	1
	등)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	물위	
	원회 또는 금융보안전문위	원호	<u> </u>
	<u>느</u>		-
			-
	②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위원	<u> </u>
	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또	<u>는</u>	-
			-
			-
			-
			-
			-
			-
		7 0	
	③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
	<u>보안전문위원회는</u>		-
			_
			_
			_
			_
	_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중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생략)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가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u>증권선물</u> <u>위원회</u>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증
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금융보
안전문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u>증권선물위원회, 금융보</u>
안전문위원회
②
, <u>증권선물</u>
위원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
간	및 그	. 연장에	대하여	겨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 그	법률의
규>	정에 띠	나른다.		

③ (생략)

제71조(권한의 위탁) <u>금융위원회</u> <u>및 증권선물위원회는</u> 금융감독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	71조(권한의 위탁) <u>금융위원회,</u>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보안전
	문위원회는